

(2017 - 04호)

건강한 금융생활정보 가이드

목차(CONTENTS)

1.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 여부 우선 확인
2.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활용하기
3.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 상식
4.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유의사항
5.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 시 유의사항
6. 기타 유의한 정보
 - 간편하고 빨라진 KEB하나은행의 개인뱅킹 서비스
 -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
(은행 방문 없이 정보조회에서 대출상담까지!)
 -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
 - 보이스피싱 관련 소비자행동 요령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1.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가 소비자 피해 증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크게 증가

사기 수법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인 것처럼 매우 정교하고, 특히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 범의 통장(대표통장)으로 상환토록 유도하여 대출금 자체를 편취하기 때문에 피해액이 크게 증가

나 금융회사 사칭 현황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TV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캐피탈사(43%) 및 상호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캐피탈사의 경우 현대, NH농협, 롯데 등을,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JT친애, OK, 웰컴 등을 주로 사칭
- ✓ 정부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햇살저축은행, 스마일저축은행 등 가짜 금융회사를 사칭
- ✓ 은행권(30%)의 경우 KB국민, NH농협, 신한 등 점포 및 고객 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사칭

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우선 문의한 후 전화를 끊고 아래 사항을 확인할 것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할 경우

①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 확인

* 금융소비자포털 '파인(<http://fine.fss.or.kr>)' 검색 또는 금감원 전화(☎1332) 문의를 통해 직접확인

- 핸드폰은 통화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감염우려가 없는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

아울러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② 영업점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

- 방문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면 사기를 의심

대출모집인이라고 할 경우

①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

*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 여부 확인 가능

-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거나 조회가 되지 않으면 사기 의심

② 필요시 금융회사에 소속 대출모집인*이 맞는지 확인

-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사기 의심

*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

※ 최종적인 대출 승인 및 한도 결정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신용등급 단기 상승, 전산 조작, 고위관계자 청탁 등을 통해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사기임

2.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활용하기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Q&A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활용하기



“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며칠전 보험회사에서 "경찰서의 추가 사고 조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연기 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전경력에 상관없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1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오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과실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 견인업체의 요금에 비해 저렴한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

부득이하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먼저 요금을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3

자동차 사고 후 교통사고로 치료가 시급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청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가지급금 제도” 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지급 가능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병소니)한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한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 가능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양식을 이용하면

- ① 사고일시 및 장소
- ②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 ③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양식은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ria.or.kr)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하게 사용

3.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 상식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Q&A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 상식

“ 얼마 전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음주운전 동승자라는 이유로 치료비의 일부만 보장하여
목돈이 들어갔습니다. 음주운전 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통상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 후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개인차에 따라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보험 불이익도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들이 흔히 혼동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회 적발시 보험료 10% 이상 증가
2회 적발시 보험료 20% 이상 증가

또한 음주운전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시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 받을 수 있고
동승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 운전 등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로 10~20%까지 보험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의 보험처리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단기운전자 담보 특약”
“고장수리 렌터카 운전담보 추가 특약”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에 가입했다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1. 보험금 한도
 - 2. 수리비 전액 부담
 - 3. 보험금 미지급
 - 4. 보험가입 제한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가족 등으로 변경하려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됩니다.

또한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 가입이 어렵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까지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유의사항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Q&A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유의사항

“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대출도 자동연장이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 은행에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급히 연락하였더니, 해외여행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되고 말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심사시 차주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여, 일반 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 시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개월 전)를 두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를 확인

특히,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므로,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의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받아두어야 만기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가능

(*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상 일시 전주를 요구할 경우,

동 대출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여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



전입신고일이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전셋집의 경매가 진행될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꼭 확인

「파인」 <http://fine.fss.or.kr>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http://www.fss.or.kr/edu>) 제공

5.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시 유의사항

가 | 현 | 황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주’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

- ✓ 관련 종목 주가는 최근 3개월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
- ✓ 또한,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 또는 허위의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

가상통화는 법적 성격 및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1.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지양

-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 및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
-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 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

2.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시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

-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하여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

참 고

-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님

-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

★ 특히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하여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

3.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6. 기타 유익한 정보

가 간편하고 빨라진 KEB하나은행의 개인뱅킹 서비스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용 형태와 니즈를 반영해 당행이 12월 1일 개인뱅킹서비스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01 깔끔한 디자인과 편리한 메뉴 찾기

- 필요한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체 메뉴 재구성 및 검색 기능 강화**
- 간결한 화면 구성, 즐겨찾는 메뉴 설정 등 **이용 편의성 강화**

02 편리한 상품 검색과 상품 가입

- 영업점 추천상품, 관심상품 등을 **[상품바구니]**에서 한 눈에 **확인 가능**
- 예금 및 적금상품 신규가입 할 때 **보안매체, 인증서 필요없이 가입 완료**



03 간편한 로그인과 빠른 이체 거래

- 6자리 간편비밀번호, 패턴그리기 **로그인 방식 추가** (모바일뱅킹만 해당)
- KEB하나은행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때는 **보안매체, 인증서 불필요**
- 보안매체, 인증서 필요없는 **[빠른이체] 신설** (모바일뱅킹만 해당, 건당 1백만원 이하)

나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
(은행 방문 없이 정보조회에서 대출상담까지!)

당행은 전국 아파트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호갱노노'(대표 심상민, hogangnono.com)와의 제휴로 은행원이 직접 찾아가는 아파트 대출 금융상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아파트 매매를 앞둔 손님들께 온라인을 통한 양질의 부동산 정보제공과 더불어 KEB하나은행 직원이 원하는 시간·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전문적인 금융상담을 제공해 드리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입니다.

아파트 매매를 앞둔 손님은 먼저 '호갱노노'의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당 매물의 실 거래가와 공급량, 지역 및 환경적 요인, 전세가율 등의 폭넓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온라인 채널 상의 '상담받기' 버튼을 통해 대출 희망일자와 기간,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KEB하나은행 1Q영업지원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지역 KEB하나은행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속하고 정확한 대출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필요 시 손님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조율 후 직접 방문하여 아파트 대출과 관련한 체계적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

지진은 지면이 흔들리는 현상으로 예고 없이 찾아와서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는 무서운 자연재난입니다.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진에 대비한 행동요령과 대처방법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무실이나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 지진발생 직후 '엎드리고, 가리고, 꼭 잡아라'
 -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
 - 테이블, 책상 등으로 피신, 베개·방석 등으로 머리 보호
- ※ 가구, 유리창, 액자 등이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부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문을 열어서 출구(비상문)를 확보하라
 - 큰 흔들림이 진정되면 출구(비상문)부터 열어둬
- ※ 문틀이 틀어져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간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속히 출구(비상문)를 열어둬



- 불이 났을 경우 신속하게 불을 진화하라
 - 전원 차단기, 가스밸브 완전차단
- ※ 지진발생시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개개인이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



- 지진이 멈추면 신속히 외부로 대피하라
 - 진동이 완전히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
- ※ 진동 중에 밖으로 대피하면 유리창, 간판 등이 떨어져 위험하며, 블록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는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음



-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금지
 - 모든 층수의 버튼을 눌러 멈춰선 가장 가까운 층에 내린 후 대피
 -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못 내린 경우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



- 지진이 발생한 경우 서로 헤어질 것을 대비하여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정하라
 -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학교, 공원 등







- 비상시 사용할 식품·약품·비품·장비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라
 - 최소 2~3일간은 스스로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



- 지진에 대비한 사전 훈련 실시
 - 평소 반복 훈련 및 대응 매뉴얼 등을 익힘

<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p style="text-align: center;">(야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판기, 전신주, 벽돌 벽 등에는 가까이 가지 않음 - 건물에서 가급적 떨어져서 가방이나 손 등으로 머리 보호하고 넓은 광장으로 대피 <p>※ 변화가나 빌딩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유리 파편, 간판 등 낙화물</p>
 <p style="text-align: center;">(백화점, 극장, 지하철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착하게 행동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쇼핑몰 등에서는 쇼윈도라든지 상품진열장에서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 보호 - 영화관이나 콘서트홀에서는 가방 등으로 머리 보호하고 좌석사이의 공간에 대피 -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 등으로 입이나 코를 막은 후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 <p>※ 직원 및 경비(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p>
 <p style="text-align: center;">(전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격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꼭 잡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벽이나 큰 기둥에 몸을 밀착 - 전철 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있는 승객은 손잡이나 선반을 잘 잡고, 앉아있는 승객은 상반신을 수그리고 머리를 가방으로 보호 <p>※ 승무원의 지시나 차내 방송에 따라 행동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자동차 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을 즉시 정차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한쪽 편에 차를 세운 후 지진의 흔들림이 멈출때까지 차내에서 나오지 말고 라디오를 틀어 정보를 청취 후 행동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산이나 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 절개지의 무너짐, 지진해일을 주의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근처나 급한 경사지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 해안에서는 지진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히 높은 지역(안전한 곳)으로 대피

※ 지진 종료 후 여진에 대비하며, 관련 유관기관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며 소문이나 유언비에 동요되지 않도록 합니다.

라 보이스피싱 관련 소비자행동 요령

□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 ✓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명 ‘보이스피싱법’)의 구제대상은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이 남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사기자금이 입금된 은행, 경찰청 112센터에 피해금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에는

- ✓ 피해자는 피해자금을 송금·이체한 은행을 방문 피해자금 이체거래내역 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경찰서 방문 사건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3영업일 이내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을 방문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흐름도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

- ✓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요구하면 100% 피싱)
- ✓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대비하여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합니다.
- ✓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시면 안됩니다.

Q.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금 환급은 어떤 과정이 중요한가요?

A.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피해예방법을 숙지하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으로 피해금이 인출되는 것을 막아 환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